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2월 17일

나. 발 의 자: 오현숙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안 제7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공무원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변에 대한 안전 대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1개의 조문과 부칙, 별표, 별지 각 1개로 구성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 안 제5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마련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방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별표] 지원 기준과 [별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에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08 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일

발의자 : 오현숙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제3조)
- 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 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공무원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프로그램 운영	제5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5조제2호	2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법률상담	제5조제3호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4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6조	예산의 범위 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호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명: ○ 계좌번호: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